

의안번호	제 186 호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

충청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용자지원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자	김정일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23년 1월 6일

충청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용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(김정일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6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3년 1월 6일  
발 의 자 : 김정일, 이상정, 박봉순,  
안지윤, 안치영, 조성태,  
박병천

1. 제안이유

- 의료비후불제 사업의 사업대상자를 도내 65세이상 노인 및 초 국민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, 국가유공자, 장애인으로 확대하여 시범사업의 취지에 맞게 더 많은 도내 보건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발굴 하고 선제적 치료가 가능하도록 하여 도민의 건강을 증진 시킬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확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지원신청 자격 및 대상자 선정 확대(안 제5조)
  - (현행) 만 65세 이상 이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, 국가유공자, 장애인
  - (변경) 65세 이상 노인,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, 국가유공자, 장애인
- 초 수급대상자로의 대상 확대에 따른 대리 신청 자격 변경(안 제10조)
  - (현행) 배우자, 직계 존·비속, 형제·자매 대리 신청 가능
  - (변경) 배우자, 직계 존·비속, 형제·자매, 후견인 대리 신청 가능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붙임
- 나. 조례안예고 :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23 - 호
- 다. 협 의 : 보건정책과
- 라. 비용추계 : 붙임

## 충청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용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용자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만 65세 이상의 거주자”를 “거주자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,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# 1. 65세 이상인 자

제10조제2항 중 “거동불편”을 “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동불편”으로, “본인이”를 “신청인 본인이”로, “본인의 동의를 받아 배우자, 직계 존·비속, 형제·자매가”를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”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신청인 본인의 배우자
2. 신청인 본인의 직계 존·비속
3. 신청인 본인의 형제·자매
4. 신청인 본인의 후견인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의료비 용자지원 신청대상자 확대 등에 따른 적용례) 제5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의료비 용자지원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한다.

## 신구조문 대조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지원신청 자격 및 대상자 선정) ①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<u>만 65세 이상의 거주자</u>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료비 용자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.</p> <p>&lt;신 설&gt;</p> <p>1. ~ 4. (생 략)</p> <p>② · ③ (생 략)</p>	<p>제5조(지원신청 자격 및 대상자 선정) ① -----  <del>거주자</del>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.</p> <p>1. <u>65세 이상인 자</u></p> <p>2. ~ 5. (현행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)</p> <p>② · 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0조(신청방법 등) ① (생 략)</p> <p>② <u>거동불편, 장애 등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배우자, 직계존·비속, 형제·자매가</u>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.</p> <p>&lt;신 설&gt;</p> <p>③ · ④ (생 략)</p>	<p>제10조(신청방법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동불편</u> ----- <u>신청인 본인이</u> -----  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</u>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.</p> <p>1. <u>신청인 본인의 배우자</u></p> <p>2. <u>신청인 본인의 직계 존·비속</u></p> <p>3. <u>신청인 본인의 형제·자매</u></p> <p>4. <u>신청인 본인의 후견인</u></p> <p>③ · ④ (현행과 같음)</p>

## 관계 법령 발췌

### □ 보건의료기본법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·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·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(財源)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, 의약품,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건강 관련 물품이나 건강 관련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(危害)를 방지하고, 각종 국민건강 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45조(취약계층 등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·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·어업인 등의 건강을 보호·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# 충청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용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## 1. 사업개요

- 사업대상 : 440,549명(65세 이상 노인 및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국가유공자, 장애인)
  - \* 65세 이상 노인(314,485), 기초생활수급자(46,638), 차상위계층(25,913), 국가유공자(6,501), 장애인(47,012)
- 대상수술 : 6개 수술
  - 삶의 질(임플란트 식립, 슬관절고관절 인공관절 수술, 척추수술) 및 생명유지(심뇌혈관 수술)
  - 자기부담금 비용이 높고, 일상생활 영위에 꼭 필요한 수술
- 의료기관 : 12개소(종합병원급 의료기관) + 치과 병·의원
- 재원규모 : 125억원(농협 정책자금, 25억×5년) \* 道 채무보증
- 도비소요액 : 51억원
- 대출한도 : 1인 50~300만원 / 3년간 무이자 상환
- 사업량 : 연 830명<sup>최소</sup> ~ 5,000명<sup>최대</sup>
- 사업내용 :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무이자 장기 분할상환 지원

## 2. 비용 발생 요인

- 지원 대상자의 대출금 이차보전금 지원
- 금융기관 대출자금 미상환금에 대한 보전비

## 3. 관련조문

- 안 제6조(지원내용) 및 제11조(채무보증)

## 4. 비용 추계결과

### 가. 추계의 전제

- 추계기준 : 최근 금융권의 저소득 대상 대출 연체율 및 추심 환수율
- 추계기간 : 향후 5년(2023년~2027년)

**나. 추계 결과**

○ 산출금액

- (세입) 385백만원 ※ 신용보증재단 부실채권 추심 환수율 10%
- (세출) 5,160백만원 [미상환금 등 3,860 / 이차보전금 1,300]

○ 산출과정 = (' 23) 922백만원 [(미상환금<sup>①</sup>+ 연체이자<sup>②</sup>) + 이차보전금<sup>③</sup>]

- ① 미상환금 보전 : 750,000천원(미상환율 30%)
- ② 연체이자 등 보전 : 22,346천원(지연이자+연체이자)
- ③ 이차보전금 : 150,000천원(이율 6%)

○ 재원조달 방법 : 도비 100%

**다. 추계사유**

- 신규사업으로 추계치가 없어 과도한 예산추계로 예산운용 차질을 방지하고자 시범사업 시행결과를 통해 적정 예산 추가편성 예정

**5. 연도별 비용추계**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계	1차년도 (2023년)	2차년도 (2024년)	3차년도 (2025년)	4차년도 (2026년)	5차년도 (2027년)
세 입	385	77	77	77	77	77
미상환금 환수	385	77	77	77	77	77
세 출	5,160	922	1,022	1,072	1,072	1,072
의료비 미상환금 지원	3,860	772	772	772	772	772
의료비 이차보전금	1,300	150	250	300	300	300

※ 상환기간(3년)에 따른 이차보전금 누계 반영